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3170
----------	------

제출연월일 : 2025. .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33,173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하여야 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6년 본예산	2025년	증감액		
1	한국지방세연구원	33,173	37,373	△4,200	법정 출연비율 인하 (1만분의 1.2 → 1만분의 1.0)에 따른 감소 ※ '25년 말 법령개정 예정	

□ 출연대상

-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1. 2. 8.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기능 및 주요사업
 -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연금액 : 33,173천원 (2025년 37,373천원)

- 전년 대비 증감액 : △4,200천원 (전년대비 11% 감소)
- 증감사유 :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25년 말 법령 개정 예정)에 따른 감소

□ 출연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필수 사항
 -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에 의거 정해진 기준에 의한 출연금의 일부를 미납할 경우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
 - 지방세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대안 연구, 지방세 쟁송 사건의 공동 대응논리 개발 및 자문 등 지방세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통한 지방세정 발전
 - 디지털 기반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신 지방세 자료 습득, 세목별 실무교육 등을 통한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우리시 활용방안

- 지방세 최신 법령정보 자료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www.olta.re.kr)에서 최신 판례·유권해석 등 조회
 - 지방세 전문가 상담 및 공무원 질의응답

○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

-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세목별 전문교육 참여
- 불복 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소송 실무교육 참여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자료 수집

-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을 위한 논리 발굴 및 자문
- 판례·유권해석 및 지방세알림e 간행물을 통한 최신 정보 습득

○ 지방세 홍보지원사업 활용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홍보 및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지원(행안부 주관), 정기분 지방세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한 홍보영상(숏폼),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지방 교육 콘텐츠 활용 홍보
 - ※ 옥외전광판 및 라디오 송출, 홍보영상 홈페이지 게시

○ 지방세수입 전망모형 등을 활용한 세수추계

- 지방세 추계결과의 오차율 분석 등 합리적 추계기법 도출을 위한 지방세수입 전망모형(세수추계) 업데이트 요청
 - ※ '26년도 하남시 수입전망' 연구과제 진행중

□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정한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출자금출연하여야 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 `25년 말 법령개정 예정)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